제421회 임시회 '24. 10. 11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 ○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15조 및 「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」제9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'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'위·수탁 협약기간 만료('24.12.31.)
-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 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O 대상사무 :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- O 위탁기간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- O 수탁기관 : 정신건강증진시설*,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
 - *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
 - ※ 現 수탁기관 : 충북대학교 병원('22.1.1~'24.12.31)
- O 선정방법: 「충청북도 시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에 따름
- O 위탁금액: 年3,472백만원(기금^{50%}1,736, 도비^{50%}1,736) * '24년 예산기준
- O 위탁내용
 -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, 자살현황 분석, 자살 및 정신관련 종사자 교육

-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,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
- 정신보건사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, 홍보 등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1)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,
- 「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」 제9조제2항²)에 따라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탁 운영 중임.
 - ※ 위탁운영 약정체결 현황: 최초(13.5.15~'15.12.31), 1차('16.1.1.~'18.12.31.), 2차('19.1.1~'21.12.31.), 3차('22.1.1.~'24.12.31.)
- O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('24. 12.3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,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5조제2항³⁾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^{1) 「}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② 시・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
^{2)「}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」제9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

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^{1.} 정신건강증진시설

^{2. 「}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^{3.}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•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• 단체

^{3) 「}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

O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「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」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□ **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** 제15조(**정신건강복지센터**의 설치 및 운영)
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<u>시·도지사</u> 및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<u>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<u>정신</u> 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- □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
 - 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<u>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</u> 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정신건강증진시설
 - 2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 - 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
- 또한, 센터의 사무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바,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호에 따른 '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'에 해당되며,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함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
 - 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- O 따라서,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사무의 내용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 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5조⁴⁾에 따라 충청북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충북도의회의 동의를 구 하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으로,
 - 센터의 민간위탁은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사무 내용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바 민간위탁 운영이 오히려 사업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- O 단 이후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.

^{4) 「}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<u>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</u>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<u>, 해</u>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<u>야 한다.</u>